

5-1. '시와 묵향의 거리' 제안

# 5.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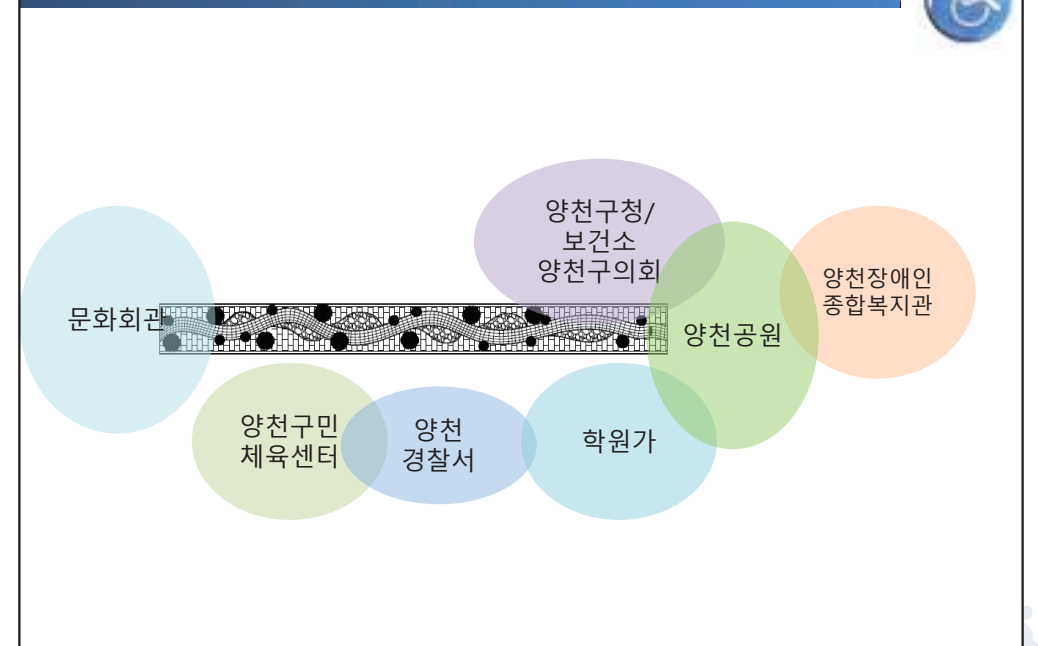
5-1. '시와 묵향의 거리' 제안

5-2.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자문단 활동일지

5-3.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보도자료



시와묵향의 거리-지역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



시와목향의 거리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보행통로의 많은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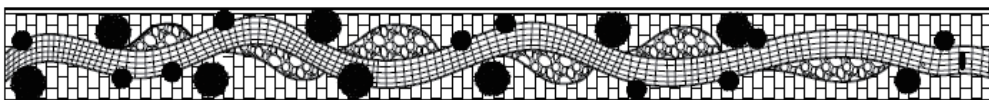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등 이동이 매우 어려움

시와목향의 거리-매우 복잡함, 위험함



10m X 100m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휠체어이용의 어려움



자전거사고 발생



형광색의 색채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중심으로



- 1)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 2) 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 3)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intuitive use)
- 4)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 5) 오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
- 6)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F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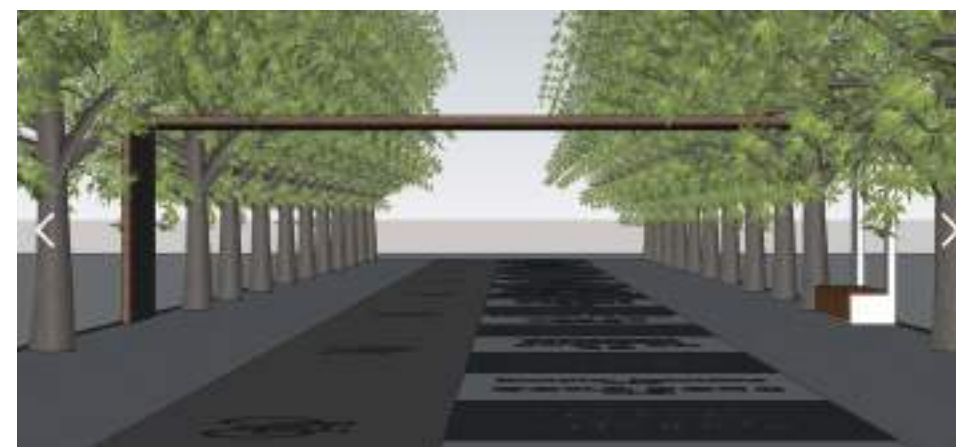
양천구 등록인구 (2017.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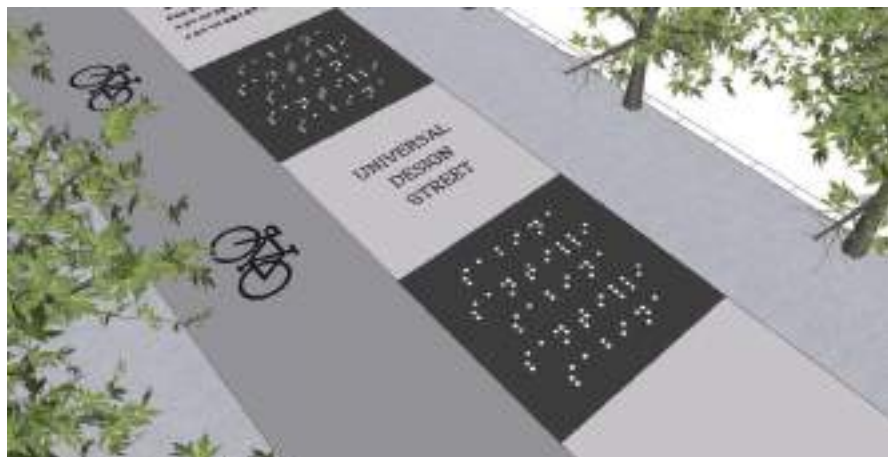
	남	여
인구	234,279	240,739
총인구	475,018	

	고령인구	장애인	어린이 (10세이하)	외국인
인구	55,235	17,350	38,012	3,864
비율	11.6%	3.7%	8%	0.8%
종합	양천구 인구의 24.1%			

1. 위험하지 않은 통행로의 확보-단순하고 직관적사용



## 2. 자전거와 보행통로 분리-점자 이용



## 3. 시와묵향의 거리의 역사성 존중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대회를 기원하며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거리 조성



## 4. BIO WALL 포토존 -미세먼지 저감식물 활용



강남구 Bio wall

## 5. 즐거운 거리- 스트리트퍼니처 /조명, 소리



### 행복한 거리-온돌벤치



전주시 탄소발열의자-버스승강장 설치

### 슈퍼그래픽-유니버설디자인 색채 적용



### 6. 미디어파사드 설치-지역예술가들과의 연계



### 유니버설디자인 그네- 휠체어 어린이 가능



### 7. 정글집이나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설치



19

### 공연을 위한 천막구조물 설치-한시적 사용



### 8. 정기적인 버스킹공연 -장애인과 함께하는



### 9. 조명의 새로운 즐거움-포토존



### 10. 바닥조명설치 -가로등 인공구조물 최대한 제거



### 12. 화단 추가설치- 개인분양



### 11. 유니버설디자인- 향기 테라피



###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거리



**유니버설디자인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기에 배려가 아닌 도시구성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

## 5-2.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활동일지

<임진이 전문자문단>

유니버설디자인단 개별TFT 활동일지1			
일시	2019년 10월 9일 10:00~12:00(2시간)	장소	코엑스몰
참석자	임진이	강현실	
		조명민	
활동내용	<p><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 회의</p> <p>1.자료정리 및 내용에 관한 의견 조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자인 업무분장</li> <li>2)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회의</li> <li>3) 새로운 관점에서의 유니버설거리 만들기</li> <li>4) 양천구만의 컨셉을 도입한 유니버설 거리디자인</li> <li>5) 도심 공원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li> </ol> <p>설치원칙: 공원은 노인,임산부, 유아, 장애인등이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방문하는 곳으로 공원의 출입구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출입구중 1개 이상은 휠체어 유모차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가능한 연속된 선택로의 주조가 되도록 설치한다.</li> <li>● 시각장애인이 충돌, 추돌, 또는 가시등에 찰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유도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등을 설치한다.</li> <li>● 출입구의 유효폭은 90cm이상으로 한다.</li> <li>● 바닥면의 높이차이로 인한 턱은 만들지 않도록 해야한다.</li> <li>● 턱 낮추기를 위해서는 1/12 이하의 기울기가 되어야 한다.</li> <li>● 자연지형을 이용한 공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단차가 생길때는 1/18이하의 우회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li> <li>● 우천시등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재료로 평활하게 만들어야 한다.</li> <li>● 도로와의 경계부분, 출입구가 직접 차도에 접한 경우에는 바닥 포장재의 변화등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유아등에게 주의를 환기 또는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li> <li>● 차량진입방지용 블라드가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li> <li>● 블라드 상호간의 유효폭은 90cm이상 이 되어야 한다.</li> <li>● 블라드는 설치지점 전후면은 150c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해야 한다.</li> <li>● 블라드의 높이는 75~90cm이상이어야 한다.</li> </ul>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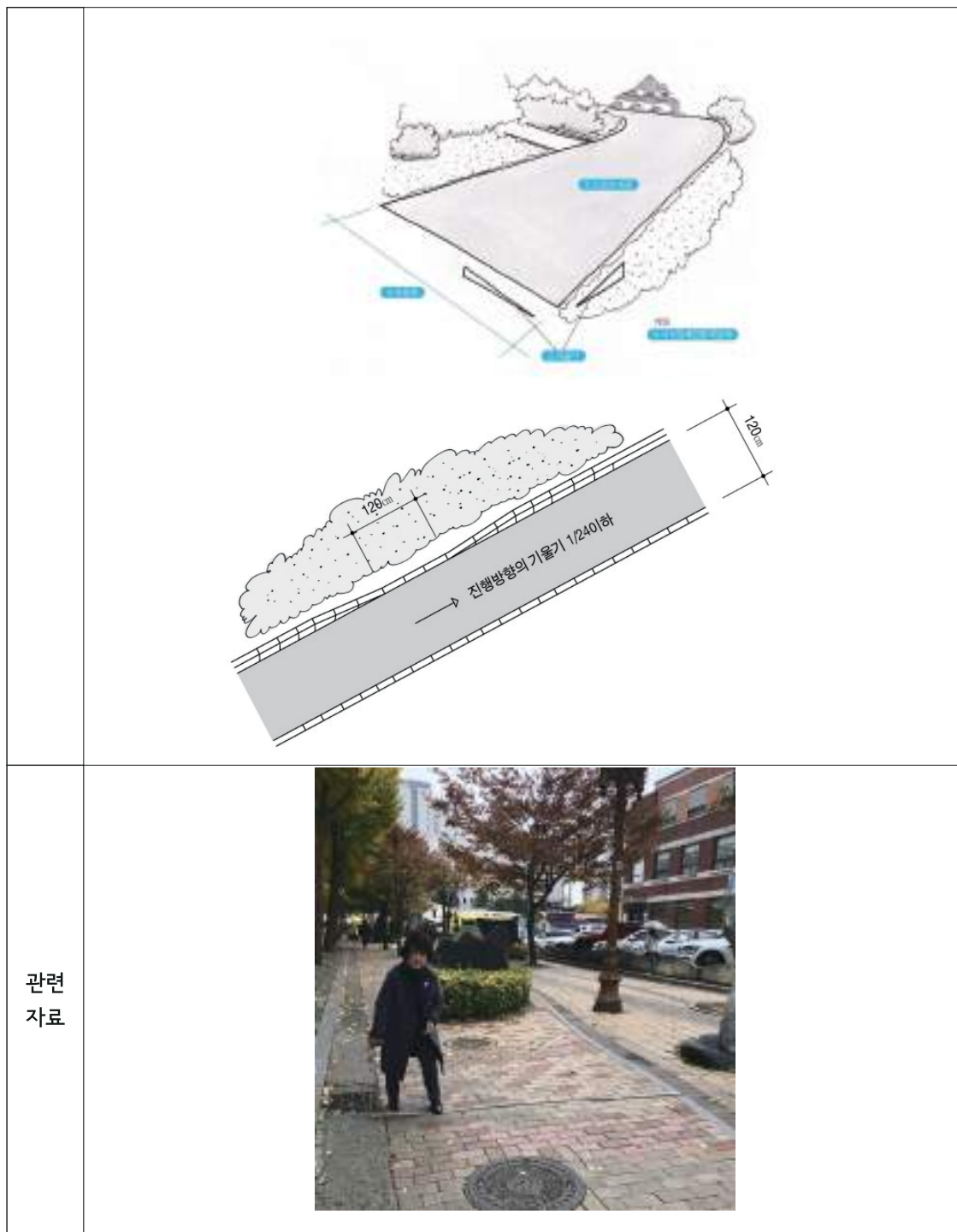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단 개별TFT 활동일지2

일시	2019년 10월 11일 10:00~13:00(3시간)	장소	양천구 시와 목향의 거리
참석자	임진이		

활동 내용	<p><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p> <p>1) 양천구 시와 목향의 거리 실측조사 2) 거리의 문제점 파악 3) 행인의 이동경로 파악 4) 장애인 및 노인, 어린이등의 이동형태 파악 5) 시와 목향의 역사성에 대한 파악 6)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p> <p>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은 가능한 최대한의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환경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을 말하며 제품이나 환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은 환경 심리 생태학에서 다양한 사용자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하나의 동등한 사용자 그룹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특별히 장애인들만을 배려한 디자인 무장애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결과로 형성되는 환경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접근방법은 장애 분야의 사회통합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듯 이러한 사회적 관심속에서 자칫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개념화시키지 못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이상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멀어지는 생활환경 디자인으로 극히 일부 소수층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값비싼 디자인이라 인식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p> <p>유니버설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요구를 평등하게 반영해야 한다 고 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Design for All).</p> <p>유니버설디자인은 디자이너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적인 디자인이고 좀 더 사회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며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개념의 차원을 뛰어 넘어 모든 연령과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지금 세계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디자인 중심의 디자인이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고 로널드 메이스 L. (Ronald M ace)씨가 디자인에 대한 이상과 사고방식을 제창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그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성으로서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supportive design), 수용 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안전한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 등의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p>
----------	--

<p>* 기능적 지원성 (Supportive Design )</p> <p>공간과 제품이 가지는 지원성의 종류와 기능을 폭 넓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또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만 하고 그러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데 있어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어떠한 부담도 야기 시켜서는 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 의존적인 사람을 위해 예 노인 조명의 밝기와 방향을 달리 조절 할 수 있는 방안.</li> <li>- 섬광이 없고 청소가 용이한 부엌 작업 면</li> </ul> <p>* 수용성 (Adaptable Design )</p> <p>시간적 요인 요구의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 가능성 능력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조절 가능성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수용가능하다 라는 의미는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절 가능한 워크 스테이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조절이 가능한 키보드 스탠트와 모니터.</p> <p>*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p> <p>접근가능성이란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물은 태도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대부분의 장애물들 이동성이나 의사소통 은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은 접근가능성을 장려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사용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가는 사람들을 위해 길가에 단차를 없애는 것.</li> <li>- 휠체어나 보행보조기의 통과를 위해 폭이 넓은 문을 설치하는 것.</li> </ul> <p>4) 안전한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p> <p>안전한 디자인은 물리적 심리적 위험을 자각하고 다룰수 있어야만 한다 건강과 복리 증진을 개선하며 예방적인 것이다 안전사고 등의 기존 문제를 제거시키기 위해 개선할 수도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기도 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조적인 색채와 패턴을 사용하여 단차를 표시함으로써 상해를 예방하는 것.</li> <li>- 청각적 시각적으로 표시 기능이 많은 경보기를 제공하는 것.</li> </ul>
---





관련 자료

### 유니버설디자인단 개별TFT 활동일지3

일시	2019년 10월 18일 13:00~16:00(3시간)	장소	한국복지대학교 연구실
참석자	임진이		

**□ 활동내용**

- 1) 양천구 시와 목향의 거리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sketch up 도면작성
- 2) 거리의 형태를 파악
- 3) Top view 이미지로 거리형태 파악
- 4) 평면도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 5)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안전색채

안전색채는 시각장애인을 포용하는 색채를 의미한다. 특히 시각장애 중 색각이상인 색맹이나 색약,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을 포함하여 다양한 색각특성을 고려한 색채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색채와 관련된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NPO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인 CUDO(Color Universal Design Organization)를 통해, 색상 인지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필요한 지식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리하고,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컬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중 색채를 주로 사용하는 안내표지, 사인물, 도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을 권장하고 있다. 작은 면적에서도 식별하기 쉬운 고채도의 강조색과 면적이 넓은 곳에 사용하는 고명도·저채도의 기본색, 무채색 등 총 22색을 제시하고 있다.

활동 내용

Accent Color	Base Color	Neutral Color																																																																		
<table border="1"> <tr><td>Red</td><td>G08-30V</td><td>8.75, 81.0</td></tr> <tr><td>Orange</td><td>G27-85V</td><td>2.6, 100.0</td></tr> <tr><td>Green</td><td>G47-40T</td><td>7.0, 61.0</td></tr> <tr><td>Blue</td><td>G77-40V</td><td>10.0, 43.0</td></tr> <tr><td>Cyan</td><td>G08-70P</td><td>5.0, 35.0</td></tr> <tr><td>Pink</td><td>G02-70T</td><td>8.0, 35.0</td></tr> <tr><td>Yellow</td><td>G15-63X</td><td>6.0, 100.0</td></tr> <tr><td>Black</td><td>G09-40T</td><td>30.0, 10.0</td></tr> <tr><td>White</td><td>G09-30L</td><td>98.0, 100.0</td></tr> </table>	Red	G08-30V	8.75, 81.0	Orange	G27-85V	2.6, 100.0	Green	G47-40T	7.0, 61.0	Blue	G77-40V	10.0, 43.0	Cyan	G08-70P	5.0, 35.0	Pink	G02-70T	8.0, 35.0	Yellow	G15-63X	6.0, 100.0	Black	G09-40T	30.0, 10.0	White	G09-30L	98.0, 100.0	<table border="1"> <tr><td>Light Pink</td><td>G05-80L</td><td>8.75, 15.0</td></tr> <tr><td>Light Blue</td><td>G25-90H</td><td>8.0, 40.0</td></tr> <tr><td>Light Green</td><td>G32-80P</td><td>7.0, 61.0</td></tr> <tr><td>Light Yellow</td><td>G08-80H</td><td>30.0, 10.0</td></tr> <tr><td>Light Orange</td><td>G19-73L</td><td>8.25, 81.0</td></tr> <tr><td>Light Purple</td><td>G42-70H</td><td>4.0, 33.0</td></tr> <tr><td>Light Grey</td><td>G02-70H</td><td>2.0, 30.0</td></tr> </table>	Light Pink	G05-80L	8.75, 15.0	Light Blue	G25-90H	8.0, 40.0	Light Green	G32-80P	7.0, 61.0	Light Yellow	G08-80H	30.0, 10.0	Light Orange	G19-73L	8.25, 81.0	Light Purple	G42-70H	4.0, 33.0	Light Grey	G02-70H	2.0, 30.0	<table border="1"> <tr><td>White</td><td>G09-30L</td><td>98.0, 100.0</td></tr> <tr><td>Light Grey</td><td>G75-80H</td><td>75.0, 10.0</td></tr> <tr><td>Dark Grey</td><td>G75-50D</td><td>70.0, 10.0</td></tr> <tr><td>Black</td><td>G09-15</td><td>10.0, 10.0</td></tr> <tr><td>Dark Yellow</td><td>G27-80P</td><td>7.0, 80.0</td></tr> <tr><td>Dark Green</td><td>G45-40L</td><td>10.0, 40.0</td></tr> </table>	White	G09-30L	98.0, 100.0	Light Grey	G75-80H	75.0, 10.0	Dark Grey	G75-50D	70.0, 10.0	Black	G09-15	10.0, 10.0	Dark Yellow	G27-80P	7.0, 80.0	Dark Green	G45-40L	10.0, 40.0
Red	G08-30V	8.75, 81.0																																																																		
Orange	G27-85V	2.6, 100.0																																																																		
Green	G47-40T	7.0, 61.0																																																																		
Blue	G77-40V	10.0, 43.0																																																																		
Cyan	G08-70P	5.0, 35.0																																																																		
Pink	G02-70T	8.0, 35.0																																																																		
Yellow	G15-63X	6.0, 100.0																																																																		
Black	G09-40T	30.0, 10.0																																																																		
White	G09-30L	98.0, 100.0																																																																		
Light Pink	G05-80L	8.75, 15.0																																																																		
Light Blue	G25-90H	8.0, 40.0																																																																		
Light Green	G32-80P	7.0, 61.0																																																																		
Light Yellow	G08-80H	30.0, 10.0																																																																		
Light Orange	G19-73L	8.25, 81.0																																																																		
Light Purple	G42-70H	4.0, 33.0																																																																		
Light Grey	G02-70H	2.0, 30.0																																																																		
White	G09-30L	98.0, 100.0																																																																		
Light Grey	G75-80H	75.0, 10.0																																																																		
Dark Grey	G75-50D	70.0, 10.0																																																																		
Black	G09-15	10.0, 10.0																																																																		
Dark Yellow	G27-80P	7.0, 80.0																																																																		
Dark Green	G45-40L	10.0, 40.0																																																																		

\* 노화에 의한 색각변화

시각기능의 퇴화는 지능이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노인의 지능이 감소하는 감각요인중 시력 감소가 75%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시력저하 증후는 선명도 상실, 대비도 상실, 주변 및 중앙시계의 부분 상실 등이 보고된다. 색 판별 능력도 감소하는데, 동공이 줄어들고 빛의 전달량이 감소하며 광수용체나 시신경의 노화가 원인이다. 노화에 따른 색각변화는 질병이 아닌 생리적 기능저하로서 드루젠(Drusen)1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대표적이다. 황반변성이란 중심시력과 색각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사물의 형태구분 능력이나 선형의 인지유류 등과 함께 색채 및 명암을 구별하는 대비감이 떨어진다(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특히 청색이나 보라색과 같이 파장이 낮은 영역에서 색 판별 능력 저하가 현저하다. 단파장(400-450nm)을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파란색은 검은색으로, 파란색의 이차색인 자주색은 빨간색처럼 보이게 되어 색 지각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는 노인의 색채 선호 조사에서 파란색을 기피하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정, 갈색, 짙은 남색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고명도저채도의 색을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작업치료학에서는 환경 개조의 기본 원칙(<http://terms.naver.com/>)을 통해 노화에 의한 시각퇴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노화에 의한 시각환경 개선방법

항목	시각환경 개선 방법
크기	사물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밝기	조명을 밝게 하거나 밝은색으로 표시한다. (예: 빨간 스티커)
대비	색채대비를 이용한다.
강조	윤곽과 표면에 색차를 두어 강조한다. (예: 거친 재질 페인트)
눈부심 방지	눈부심을 감소시킨다.

\* 색각이상

색각은 대상의 물리적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시각과 뇌신경계를 통해 만들어내기 때문에 색에 대한 인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미세한 색인식의 차이를 넘어 정상인과 다른 색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색각이상(color blindness)이라고 한다.

색의 식별은 망막내의 시세포 중 하나인 추상체 (원뿔세포 cone cell)의 기능이 좌우한다. 이 원뿔세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빛 파장의 영역이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L, M, S추상체2)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추상체는 적색, 녹색, 청색(RGB)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3원색 결합에 의한 별도의 쌍으로 배합하여 모든 색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3원색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색각이상이 되며, 색채를 볼 때 조명이 약하고 채도가 낮고 크기가 작을수록 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 선천적 색각이상은 유전적으로 적색, 녹색, 청색 세계의 추상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결핍으로 발생하며, 후천적 색각이상은 망막혈관질환이나 연령 관련 황반변성 등의 망막 및 시신경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후천적인 경우 양안에 나타나는 색각이상의 정도가 다르며 단안에서도 시야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후천적 색각이상은 제3색각이상이 가장 흔하며, 주로 청황 색각이상을 보인다(<http://www.snuh.org/>)

\* 색각이상의 유형

색각이상은 비정상적인 추상체에 따라 제1색각이상, 제2색각이상, 제3색각이상으로 분류된다. 제1색각이상은 적색추상체의 기능 이상이나 결손이 있는 경우로, 적색이 빛의 삼원색 중 제1색이므로 제1 색각이상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 적색 원뿔세포가 없는 2색형색각자를 적색맹이라 한다. 또는 적색 원뿔 세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광색소가 달라 분광민감도가 정상인과 다른 경우를 적색약이라고 한다.

제2색각이상은 녹색추상체의 기능 이상 혹은 결손이 있는 경우로, 녹색 원뿔세포가 없는 2색형색각자를 녹색맹, 녹색원뿔 세포가 있지만 그 광색소가 비정상적인 경우를 녹색약라고 한다. 색각이상 중에서는 녹색약이 가장 많아 전체 색각이상의 25~4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녹색맹, 적색맹, 적색약의 순서이다. 제3색각이상은 청색추상체의 기능 이상 혹은 결손이 있는 경우이고 이는 전체인구의 0.005% 이하에서 나타나는 매우 드문 형태이다. 선천성 색각이상의 99%는 제1 혹은 제2색각 이상이다.

(<http://health.cdc.go.kr/> health/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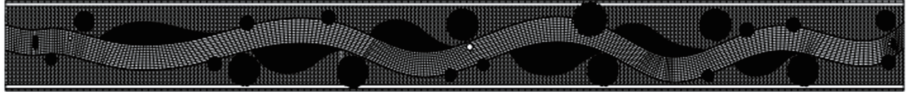
정상색각과 2색형색각 비교 색각이상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2색형색각은 두 가지의 추상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제1색맹(적색맹)과 제2색맹(녹색맹), 그리고 제3색맹(청색맹)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색맹은 L추상체가 결여되어 초록-노랑-빨강 스펙트럼을 구별할 수 없다. 그리고 정상 시각의 중심점인 555nm의 밝기가 492nm로 보이기 때문에 주황-빨강의 영역이 아주 어둡게 보여 신호등을 볼 때 붉은 신호가 꺼진 것처럼 보인다. 제2색맹은 M추상체의 결핍으로 나타난다.

제1색맹과 비슷하게 초록-노랑-빨강을 구별할 수 없으며 중심밝기의 기준은 498nm이다. 제3색맹은 S추상체의 결핍으로 나타나며, 파랑-노랑 부분의 스펙트럼을 구별할 수 없다. 즉 짧은 파장은 초록으로 장파장은 빨강으로 보이며 중심밝기의 기준은 570nm이기에 실제로 파란색만 볼 수 없어야 하지만 노란색도 동시에 볼 수 없다.



이상3색형색각은 세 가지의 추상체가 모두 존재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 종류의 분광민감도가 비정상적이어서 해당하는 색의 인식이 정상인과 다른 경우이다. 색약이라고도 하며 L, M, S 추상체의 결여라는 부분은 제2색각색맹과 유사하나 추상체의 결핍을 필터나 조명의 보완으로 해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1색약(적색약)은 빨간빛을 보완하여 극복(Han, Moon 2016)된다. 제2색약(녹색약)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초록빛을 보완하여 극복할 수 있다. 제3색약(청색약)은 파란빛을 보완하여 극복되며 가장 드문 경우로서, 황반현상으로 일어나는 파란색을 볼 때

<p>명도와 채도가 낮아 보이는 노인성 시력저하와 유사하다.</p> <p><b>* 색채와 교통안전표지</b></p> <p>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를 제외한 표지를 말한다.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 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규제, 지시 및 주의 의무 그리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도로상황과 노면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안전표지의 본 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보조표지와 함께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보조표지는 반드시 본 표지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본 표지를 부연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p> <p>교통안전표지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환경과 공학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지의 규격과 설치기준은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www.koroad.or.kr).</p> <p><b>* 교통신호기</b></p> <p>교통신호기는 도로교통에 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기는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전방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호기의 위치, 설계, 신호지시의 의미 등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http://terms.naver.com/).</p> <p>신호등은 차량등, 보행등 및 차량보조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차량등과 차량 보조등을 차량 신호등이라고 한다.</p> <p>색채지각에 이상이 있는 노인이나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교통안전색채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노인 및 색각이상자들의 색채식별 특성,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규정 등을 토대로 제안한다. 분석결과 일곱가지 안전색채의 색채만으로는 교통안전표지 유형을 모두 인식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안전색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노인이나 색각이상자 뿐만 아니라 정상색각자에게도 현재의 교통안전표지는 직관적인 인식과 색채식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색채지각과 노화에 의한 색채 외의 감각기관 퇴화 등에 의하여 색채뿐만 아니라 형태나 주변상황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p> <p>첫째, 형태와 색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교통안전색채와 특정 형태의 의미를 함께 부여하여 병용하는 방법이다. 노면표시와 검정과 하양의 무채색을 제외한 네 가지 색에 각기 다른 기하학적 형태를 조합하여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p> <p>둘째, 색채와 글자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단색으로 사용하는 면의 색채에 한정한다. 바탕색채에 글자색이 중첩되어 표출되므로 선명하고 직관적인 색채지각을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반드시 시인성을 확보해야 하는 신호등 등의 표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p> <p>셋째, 색채와 패턴을 혼용하는 방법이다. 식별이 어려운 특정 선의 색채와 배색에 한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로 구분이 어려운 인접색상 및 명도대비나 채도대비의 색차가</p>	<p>적은 경우 등에 유용한 방법이다.</p> <p>넷째, 교통안전색채와 인접한 기타 시설물과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보완을 제안한다. 교통안전표지와 유사한 광고물이나 안전표지를 변형한 광고물, 안전색채와 유사한 색채사용 광고물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신호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 신호등의 설치 위치와 거리뿐만 아니라 크기, 색상차이 등에 대한 면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보완이 필요하다.</p> <p>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색채는 우선 접근 가능한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일상의 안전과 불편을 경험하는 노인 및 시각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토대로 정책개발과 설계, 실행이 연속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후 개선방안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규 보완과 세부지침 등이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각매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준화된 지침이 제시되기를 바란다.</p>
--	--

<p>적은 경우 등에 유용한 방법이다.</p> <p>넷째, 교통안전색채와 인접한 기타 시설물과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보완을 제안한다. 교통안전표지와 유사한 광고물이나 안전표지를 변형한 광고물, 안전색채와 유사한 색채사용 광고물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신호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 신호등의 설치 위치와 거리뿐만 아니라 크기, 색상차이 등에 대한 면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보완이 필요하다.</p> <p>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색채는 우선 접근 가능한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일상의 안전과 불편을 경험하는 노인 및 시각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토대로 정책개발과 설계, 실행이 연속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후 개선방안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규 보완과 세부지침 등이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각매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준화된 지침이 제시되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양천구 시와목향의 거리 노면</b></p>  <p><b>관련 자료</b></p> <p>10M X 100M</p> <p>전체거리는 직선형이지만 돌조형물과 조명등을 피해서 인도가 구불구불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량에 비하여 인도가 좁고, 휠체어의 교행이 불가능하며 유모차가 이동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p> <p>또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여 도보로 걷는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유모차와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도로의 개선이 절실하다.</p>
--	---

## 유니버설디자인단 개별TFT 활동일지4

일시	2019년 10월 25일 13:00~16:00(3 시간)	장소	한국복지대학교 연구실
참석자	임진이		
활동내용	<p><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니버설디자인 자료조사</li> <li>2) 공공디자인 자료조사</li> <li>3) 스트리트 퍼니처 자료조사</li> <li>4) 거리의 조명등 조사</li> <li>5) 통행로 바닥 재료 조사</li> <li>6)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li> </ol> <p>* 장애인 복지의 이념</p> <p>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당하며 많은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에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의 어려움이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요건을 마련해준 상태에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p> <p>세계인권선언(UN 1948)에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권리선언(UN총회결의)에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되며 일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헌장(1998)에서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교통, 통신시설, 공공건물, 도로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직업, 교육, 여가생활, 정치활동등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히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사회 곳곳에서 편견과 차별을 맞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0년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출현율은 전 인구의 3.09%(약145만명)으로 추정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예방 가능한 출생 후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나타났다. (지체장애96.3%, 시각장애 92.2%, 청각장</p>		

애 84.7%, 언어장애61.4%)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출생 후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주요 원인을 보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빈곤, 약물중독, 산업재해로 인한 생태계 파괴, 공해식품의 섭취와 오염 및 남용과 마약중독, 직업이나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었다. 이들 대부분의 원인들은 사회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장애원인을 장애인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음을 그 원인들이 상당부분이 사회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원인을 제공해 온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 장애인의 심리학적 이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초조하고 스트레스에 쌓이기 쉽고, 신경질적인 분노증세나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것도 신체장애가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시켜 신체적 손상이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현실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슬로우(maslow)는 장애인들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겪게 되고 적응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충격 혹은 현실화이며 두 번째는 방어적 후퇴, 또는 부정이며 세 번째는 안정이다. ‘인정-부정-인정-부정’의 사이클은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번 되풀이 된다. 그러나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심리적 발달수준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메이어슨(1971)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대한 세 가지 태도는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비장애인의 세계로부터의 철회(withdrawal)이다. 즉 제한적이지만 아주 안전한 장애인 사회에서 장애인의 역할에만 머무르려고만 한다. 이때에는 장애인 자신에게 분명한 정의를 제공하지만 귀중한 사회적 접촉과 단절되며 또한 철회하는 장애인이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에 대해 과민반응하며 비장애인과 협의를 통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와 반대로 장애의 세계를 부정하고 비장애인의 영역에만 살고자 갈망한다. 흔히 이런 적응은 중도(中途)장애인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통합된 사회에 적응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응도구가 없는 장애인들이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과잉보상(overcompensation)이나 부정(denial)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장애를 아예 무시하고 정상인의 가치기준에 부합하고자 자신을 과신함으로써 우울증과 실망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는 타협이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영역(common ground)에서 삶을 추구한다. 이는 장애인의 적응양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혹은 지나친 보상을 하려들지 않고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존감’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장애’가 가치저하의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가치영역(scope of value)을 넓히는 것이다. 가치의 대상과 범위는 다양하며 또한 상대적인 것임을 알도록 개인적인 견해를 보다 확대해 주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장애에만 국한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여 장애와 자신을 초월한 더 넓고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그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을 세우는데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따라서 정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반응**

장애인들 못지않게 일반인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러(siller,1967)는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게 대하는 반응은 접촉시 일어나는 긴장감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반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맹인, 농아, 장애인등과 같은 말조차 쓰기를 꺼리게 되고, 장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없이 단지 자신의 생각만으로 분리교육을 주장하거나 입학거부나 고용 거부등을 나타내는 태도이다. 또한 권위주의적 태도로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것을 동정심에 근거한 미덕으로 믿는 태도이며, 장애인 누구나 이상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들을 바라면서 자신의 약점이나 죄를 생각하여 자신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간주해 버리는 반응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 또한 장애인들에게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곳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게 대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고려하고 교육하고 계몽하며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형성 및 배경**

**1)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 정상성**

스웨덴에서 노말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은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의 스웨덴 현대 사회복지단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고 훌륭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누린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가능하게 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보았다. 정상성(normality)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뉴리에(B.Nirje)로 그는 “노말라이제이션이란, 우리가 지적 장애 및 여타의 결함을 가진 이들의 일상생활 조건과 삶의 패턴을 가능한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문화내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환경과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만들어주어 올바르게 행동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노말라이제이션은 장애인들의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비정상인들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함께 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말라이제이션을 실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노말라이제이션이 처음 전개되었을 때는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주류를 이루던 때였다. 따라서 장애인 수용시설의 생활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부터 출발되었으며 시설 보호주의에 반대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들과 동등하게 자신들의 장애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 장애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회, 자신들의 장애와 특별한 요구들을 수용해주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 가운데 일부는 특정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이것 역시 노말라이제이션을 의미한다.

원래의 노말라이제이션 이론은 무엇보다도 권리에 관련된 이론이다. 그것은 사회가 장애를 핸디캡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완벽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칸디나비아식 노말라이제이션은 모든 사람들(장애가 있건 없건)이 스스로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한다. 이는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될 아주 단순한 개념이다. 사회가 부여하는 복잡한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호에 관한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소비자 운동의 요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것은 노말라이제이션 원리가 처음 등장했던 30년 전과 다름없이 아직도 유용하다. 따라서 노말라이제이션은 “주의”나 포괄적인 이론 혹은 전략을 표방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하며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철학이다.

**2) 사회적 역할 가치화 (SRV : Social RoleValorization) / 정상성**

미국의 월펜스버거(Wolfensberger)에 의해 체계화된 SRV는 뉴리에의 노말라이제이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된 사람들을 위하여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해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볼 수 있는데, 가치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장애인이거나 가치박탈의 결과로 신체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난, 영양결핍, 안전하지 못한 생활환경,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으로 장애를 입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가치박탈의 결과로 일어나기 쉽다. 또한 가치박탈당한상태 및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덜 똑똑하고, 문맹이거나 정신적 갈등 상태에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읽고 쓰는 능력, 타인과 어울리기, 가정을 꾸리는 등 , 외모에 신경쓰는 등 기능적인 몇몇 영역에서 장애를 겪게 된다. 따라서 가치박탈당한 사람들은 낮은 사회적 위치로 격하되고 무시당한다. 이들은 이류시민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가치 박탈된 이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것들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경험이 된다. 가난하게 되는것, 사회적 위험이나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인식 되는것, 격리되는 것, 중요한 삶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것, 일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역할관련 이론이 노말라이제이션과 접목된 것은 1982년 월펜스버거가 노말라이제이션은 가치가 박탈된 이들에게 다시 가치가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노말라이제이션 원리를 재확인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듬해 월펜스버거는 이러한 재공식화를 통해 원리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고 역할 이론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노말라이제이션 이론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역할에 배정된 사람들은 완전히 통합되고, 높은 가치가 부여된 ,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가치부여된 역할은 긍정적인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며, 그 결과 능력향상을 촉진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삶의 좋은 요소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  
자료



유니버설디자인 스트리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우선 도로를 직선화하고 자전거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으며, 시와 목향의 거리의 역사성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단 개별TFT 활동일지5

일시	2019년 11월 3일 15:00~17:00(2시간)	장소	양재동 늘봄카페
참석자	강현실	임진이	
		조명민	
활동 내용	<p>소요시간 : 12:00~16:00</p> <p>회의 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임스케줄 수정</li> <li>UD아이디어 발표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현실: ●체육시설 건물 H빔에 누구나 탈수 있는 그네 설치 : 현재의 철골 구조물은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dead space. 이후에는 주민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돌려줘야 함. 해외의 경우 철탑 아래에도 그네 들을 활용하여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음.</li> <li>-임진이: 기존 시와 목향의 거리의 시를 바닥에 이동으로 설치와 점자와 유니버설디자인 로고를 활용하여 스트리트 퍼니처를 설치함.</li> <li>-조명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우천시 우산 없이 걸을 수 있는 공원조성, 천정형 미디어 파사드 적용,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에 대한 고민</li> </ul> </li> <li>컨셉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안하고 재미있는 공간만들기</li> <li>-보행 중 불편한 턱 제거, 조형물 제거,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색채 제거.</li> </ul> </li> <li>기타                     <p>유니버설디자인거리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 2002년도에 설립된 의미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것보다는 역사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유니버설디자인 거리의 이념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함.</p> <p>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건축에서 바라보는 무장애공간과의 차별성에 대하여서도 고민함.</p> </li> </ol>		



## 유니버설디자인단 개별TFT 활동일지6

일 시	2019년 11월 9일 13:00~15:00(2시간)	장 소	한국복지대학교 연구실
참석자	임진이		
활동 내용	<p>□ 활동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니버설디자인 자료조사</li> <li>2) 유니버설디자인 거리를 위한 자전거 도로 조사</li> <li>3) 자전거도로 1차 드로잉</li> <li>4) 자전거도로 스케치업 작성</li> <li>5) 디자인 정책</li> </ol> <p>* 디자인정책 선행연구와 원칙</p> <p>1) 정책의 개념과 구조</p> <p>정책의 개념에 대해 학계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린다. 어떤 연구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책학이 학문적 수준에까지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라스웰(H.Lasswell)은 정책을 “ 사회 변동의 계기로서 미래 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재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다른 학자 이스턴(D.Easten)은 정책을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분배자이자, 정치 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 권위적산출물의 일종”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산출은 표정된 정책 또는 의도된 정부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성과는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나온 이차적인 효과 내지 현실 사회에 끼치는 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p> <p>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수단은 실질적 내용으로서 중요한 정책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책수단은 효과와 능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적정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부가 지배하는 주요 자원들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이 있다. 주요 대표 자원들은 정보, 권위, 자금, 조직이 있는데 대표적인 자원들에 대한 정책수단을 나열하였다. 다양한 디자인정책 또한 정책수단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 중 위, 자금, 조직 기반의 정책수단을 통한 법과 지자체 조례, 가이드라인에 대해 연구한다.</p> <p>2) 국내 디자인정책 현황</p> <p>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대부분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의 정도와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역사·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알페이 얼은 정부의 개입 정도에</p>		

따라 국가 디자인 정책을 통제형,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및 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제형 정책은 산업은 정부소속이고 디자인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고안되고 실행된다. 강력한 정부의 주도 정책이며,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올바른 디자인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되어 진다. 중앙집중형은 디자인을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하여 정부 주도로 주요 디자인 정책이 수립·집행되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양의 재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산형은 정부나 비정부 디자인 진흥단체를 통해 가능하다. 이들은 자금 지원을 받는 준 독립기관이다. 이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국가정책이 없는 대신 디자인센터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한 재정 상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힘은 거의 없다. 혼합형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을 사안별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상위법이나 규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떠한 정책의 유형을 가졌는지 정의할 수 없다.

자료 출처: 한국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률명	제정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87
	장애인차별금지법(1987년 제정, 2009년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2009년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2009년 제정)	1987
보건복지부	유아보호법	2005
	장애인복지법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2009년 제정)	2009
	장애인복지법(2009년 제정)	2009
	장애인복지법(2009년 제정)	2009
	장애인복지법(2009년 제정)	200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향상을 위한 법률	2018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제정)	1988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제정)	198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18년 제정)	2018
	행정안전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보건복지부(2018년 제정)	2018

3) 유니버설디자인과 국내법

정책의 주요 수단 중 권위에 기반을 둔 법률은 명령과 통제적 규제, 표준설정과 위임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수단인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률은 관련 정책의 현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전반에 걸쳐 있다.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인식과 사고방식, 서비스, 제품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상위법이 없어 유니버설디자인을 규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 현황을 보면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츰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시정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상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공공디자인 계획 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명	목적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관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이동권 보장</li> <li>유니버설디자인 조례중 적용및 도입 범위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와 연계성이 있음</li> <li>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공공공간(가로),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의 세부 기준수립에근거로 하고 있음</li> </ul>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에 필요한 계획, 관련시설 기준 제시</li> <li>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적용및 도입범위 중 도로와 연관성이 있음</li> <li>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있음</li> </ul>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고령자·북한이탈주민, 수급자 등의 정보약자에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제공</li> <li>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근거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li> </ul>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보호구역 지정·관리 절차 및 기준제시 및 교통안전 교육 제공</li> <li>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적용 및 도입범위 중 도로와 연관성이 있음</li> <li>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공공공간(가로)의 세부 기준과 연관성이 있음</li> </ul>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p>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li> <li>• 대상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별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중 적용 및 도입 범위에 대한 공원 및 공공건축물 등과 연계성이 있음</li> <li>•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공공공간(공원), 주거건축물, 공공건축물, 공공매체의 세부 기준수립에 근거로 하고 있음</li> </ul>
<p>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p>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에게 고용, 교육, 매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시설물 접근·이용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li> <li>•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목적과정의 부분에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큰 개념과 일치함</li> <li>•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제작 목적에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li> </ul>
<p>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규칙</p>	<p>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과 인증기관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로 접근·이용·이동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 교통시설, 건물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설치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하고 보장하는 제도</li> <li>•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기본조례의 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과 관련된 내용</li> <li>•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방안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li> </ul>

현재 우리나라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편의성 및 안전성 개선 위주로 물리적인 부분에 편중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주요 수단인 법률과 조례를 분석해보면, 개념 자체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디자인에 한정되어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에 더해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좀 더 확장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이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주로 하드웨어적인 환경(건축, 공간), 제품에 집중되었던 관점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사회 시스템, 의사소통,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물리적 영역에서는 건축과 도로, 공원 등 도시환경의 각 접점이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각각지자체가 따로 펼치는 정책보다 국가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 유

	<p>니버설디자인을 가장 밀접하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또한 법률과 조례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인 환경(건축, 공공시설물)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서는 물리적 개선 사업에 더해 시민의 공공의식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쉽도록 물리적 환경개선에 더해 그 유니버설디자인을 이용하며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대한 인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은 단기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물리적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더해 사회구성원 의식개선을 위한 문화적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유니버설디자인 문화가 확산되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물리적 사업의 한계를 사회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p>
<p>관련 자료</p>	 <p data-bbox="1605 1168 2584 1296">       유니버설디자인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도로의 폭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나누어 통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 비를 피할 수 있는 스트리트퍼니처를 디자인하여 주민이나 장애인들이 이동중에 쉴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함.     </p>

## 유니버설디자인단 개별TFT 활동일지7

일 시	2019년 11월 12일 10:00~11:00(1시간)	장 소	양재역 엘타워
참석자	강현실	임진이	
		조명민	
활동 내용	<p><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 :</p> <p>1. 자료정리 및 내용에 관한 의견 조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현실 : 무장애 탄성 그네 설치/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감있는 재료에 대한 의견 _ 목재, 스텐인레스, 철재/ 야간조명 설치 후 야간 이용에 관한 안전 문제.</li> <li>- 임진이: 자전거 거치대, 조경 디자인 의견, 재미있는 유니버설디자인공간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비장애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만족한 거리 만들기.</li> <li>- 조명민: 파고라 천정에 빔을 연계한 미디어 연출하여 날씨에 따라 변경되 미디어 그늘막 설치, 벤치에 온돌 적용하여 겨울에는 따뜻한 벤치, 마감재 특성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차가운 벤치로 활용</li> </ul> <p>2. 기타</p> <p>유니버설디자인개념에서 각 영역별로 적용해야하는 부분을 의논함.</p> <p>노인의 신체적인 어려움과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풀어낼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함.</p> <p>외국인에 대하여 의논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한글을 읽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고민함.</p> <p>장애인에 대하여 의논함.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와 목향의 거리를 통하여 이동하게 될 때 건물목과 거리를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함.</p> <p>어린이 및 학생들에 대하여서도 의논함.</p> <p>시와 목향의 거리는 학원과 학교가 밀집된 곳으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되고 있으나 좁고 위험요소가 많아 이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됨.</p>		

관련 자료

